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443
----------	-------

발의연월일 : 2025. 10. 1.

발 의 자 : 허영 · 박상혁 · 강준현
김승원 · 한병도 · 진선미
한민수 · 김병기 · 한정애
위성곤 · 소병훈 · 이연희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규율하고 공제조합 제도를 통해 기본적인 소비자 보호 장치를 두고 있으나, 사업자의 자산 운용에 대한 통제와 지배주주와의 거래 투명성 확보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그로 인해 일부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사적 이익을 위해 활용하거나, 지배주주와의 불투명한 내부거래로 건전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공제조합 운영 과정에서도 임직원 관리 · 감독과 제재가 충분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음.

아울러 현행 감독 체계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선수금 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같은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

당국의 전문적 지원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요구됨.

이에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자의 지배구조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제조합 운영의 책임성과 감독을 강화하며, 선수금 운용 원칙과 건전성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감독 기반을 고도화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하고 안정적인 할부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일반현황, 지배구조 현황 및 지배주주등과의 출자, 거래관계 등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함(안 제18조).
- 나.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시 지배주주와의 거래, 자산운용 현황 등을 나타내는 주요 주석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8조의2).
- 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임직원 해임 요구 시 해당 임직원의 직무정지를 명시하여 부적절한 임직원의 공제조합 업무수행을 배제함(안 제30조 및 제31조).
- 라. 공제조합이 설립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사업을 장기간 중단한 경우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의2).
- 마. 공제조합 임직원 징계·해임요구 및 시정명령 불이행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임(안 제53조)

조).

바. 선수금 운용 시 안정성·유동성·수익성 확보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회계처리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34조의2).

사. 선수금 운용과 관련하여 투기자금 대출, 지분매입 목적 대출, 채무보증·담보제공 등 금지행위를 신설함(안 제34조의3).

아.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자본금의 50퍼센트 이내로 제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신용공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사후보고 및 공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34조의4).

자. 신용공여 한도 관련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48조, 제50조, 제53조).

차. 지배주주등에 대하여 사익을 취할 목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행위제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34조의5).

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마련하고, 미달 시 자본금 증액, 위험자산 소유제한 등 시정조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의6).

타. 감독 및 행정처분 주체를 공정거래위원회로 일원화하되, 선수금 운용 건전성 감독에 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7조의2, 제42조의2).

파. 공제조합 설립인가 취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취소, 임원해임요구 등 중대한 처분 시 청문 절차를 의무화함(안 제45조의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의2, 제7호의2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선수금”이란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을 말한다.

7의2. “임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이사

나. 대표이사

다.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라. 감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람

10. “신용공여”란 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제6항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일반현황, 지배구조현황 등에 관한 사항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지배주주 및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 간의 출자, 거래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8조의2의 제목 “(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개)”를 “(회계감사 보고서의 작성·제출 및 공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계감사 보고서의 작성·제출 및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이하 “선수금”이라 한다)”을 “선수금”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이사 및 감사

제31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3항, 제4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임직원의 해임을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직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제3장제2절에 제31조의2 및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설립인가의 취소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제28조제4항에 따른 출자금 규모에 미달한 경우

3. 3회 이상 제31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는 경우 다른 공제조합을 지정하여 취소의 대상이 되는 공제조합이 체결한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계약의 이전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어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도지사에게 제27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과 관련한 이행계획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의2(선수금 운용의 원칙)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을 운용할 때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선수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③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의 운용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34조의3(선수금 운용 관련 금지행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이나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2.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분을 매입하도록 하기 위한 대출
3. 채무의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보증이나 담보의 제공에 따른 신용위험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위한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은 제외한다)
4. 정당한 이유 없이 지배주주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지배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에 관하여는 제34조의4에 따른다.

제34조의4(지배주주등에 대한 거래제한 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그 지배주주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다.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추가적인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 또는 자본금의 변동, 지배주주등의 변경 등으로 제

1항에 따른 한도를 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적임원 전원의 찬성을 거쳐야 한다.

④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34조의5(지배주주등의 행위제한 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등은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이익에 반하여 지배주주등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함께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누구에게든지 제34조의4제1항의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신용공여에 관여하는 행위

4. 금리, 수수료 또는 담보 등에서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배주주등 자신이나 제3자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등이 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또는 그 지배주주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의6(경영건전성 기준)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재무구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4.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영건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증가, 위험자산의 소유 제한 등 경영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등(회사에 한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의 부실화로 인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경영건전성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배주주등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신규 취득 금지
2. 그 밖에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 성격의 거래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35조 앞의 “제3절 조사 및 감독”을 삭제한다.

제3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조사 및 감독

제35조제1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보고 및 감독)”을 “(보고)”로 한다.

제4장에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감독)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그 지배주주등을 감독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선수금 운용의 건전성 감독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융위원회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나 그 지배주주등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그 지배주주등에 대하여 선수금 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하고, 그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또는 그 지배주주등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검사의 방법·절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그 밖의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8조 앞의 “제4절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를 삭제한다.

제38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제4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2조의2를 제42조의3으로 하고,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행정처분)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그 지배주주등이 제4장 또는 제4장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2. 경고
3. 주의
4.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5. 수사기관에의 통보 또는 고발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임직원이 제4장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위반행위에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또는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2.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또는 정직요구
3. 임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또는 문책요구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또는 그 지배주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 이하
2. 지배주주등이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 이하

④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4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2 앞의 “제4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42조의3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보칙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청문)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해임권고 또는 면직요구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6조의 제목 “(사무의 위탁)”을 “(권한의 위임·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2항,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를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27조의5 및 이 조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사업자단체의”를 “자의”로 한다.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48조 앞의 “제5장 벌칙”을 삭제한다.

제48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벌칙

제48조제1항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4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3의3. 제34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자

3의4. 제34조의5의 금지행위를 한 자

3의5. 제34조의6을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

제50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4조의3의 금지행위를 한 자

제53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7조의2·제42조의2에 따른 검사·조사·명령·요구에 따르

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53조제2항에 제10호의2 및 제10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제11호 중 “소비자가”를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가”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8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10의2. 제34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재적임원 전원의 찬성을 받지 아니한 자

10의3. 제34조의4제4항·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주요 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③ 제31조제4항에 따른 징계·해임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5. (현행과 같음) <u>5의2. “선수금”이란 소비자로부</u> <u>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u> <u>는 재화등의 대금으로서 미리</u> <u>수령한 금액을 말한다.</u>
6. · 7. (생 략) <u><신 설></u>	6. · 7. (현행과 같음) <u>7의2. “임원”이란 다음 각 목의</u>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u> <u>말한다.</u> <u>가. 이사</u> <u>나. 대표이사</u> <u>다.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u> <u>임사원</u> <u>라. 감사</u> <u>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u> <u>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u> <u>사람</u>
8. · 9. (생 략) <u><신 설></u>	8. · 9. (현행과 같음) <u>10. “신용공여”란 금전 · 증권</u> <u>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u> <u>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u> <u>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u>

제18조(영업의 등록 등) ① ~ ⑤
(생략)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신설>

<신설>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 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영업의 등록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1. (현행과 같음)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일반 현황, 지배구조현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지배

2. (생략) ⑦ (생략) 제18조의2(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개) ①·② (생략) <신설>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18조에 따라 등록할 경우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이하 “선수금”이라 한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u>주주 및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 간의 출자, 거래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4. (현행 제2호와 같음) ⑦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회계감사 보고서의 작성·제출 및 공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계감사 보고서의 작성·제출 및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 선 수금----- ----- ----- ----- ----- ----- ----- -----.
---	---

1. ~ 4. (생 략) ② ~ ⑫ (생 략) 제30조(공제조합의 정관 및 공제 규정)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생 략) 2. <u>임원에 관한 사항</u> 3. ~ 6. (생 략) ② (생 략) 제31조(공제조합의 감독) ① (생 략) ② · ③ (생 략) ④ (생 략) <u><신 설></u> <u><신 설></u>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⑫ (현행과 같음) 제30조(공제조합의 정관 및 공제 규정)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u>이사 및 감사</u> 3.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공제조합의 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②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u>제4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임직원의 해임을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직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u> <u>제31조의2(설립인가의 취소 등)</u> ① <u>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설립인가를</u>
---	--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제28조제4항에 따른 출자금 규모에 미달한 경우

3. 3회 이상 제31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는 경우 다른 공제조합을 지정하여 취소의 대상이 되는 공제조합이 체결한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계약의 이전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1

<신 설>

<신 설>

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어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도지사에게 제27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과 관련한 이행계획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의2(선수금 운용의 원칙)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을 운용할 때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선수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③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의 운용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34조의3(선수금 운용 관련 금지

행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이나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신 설>

대출

2.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분을 매입하도록 하기 위한 대출

3. 채무의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보증이나 담보의 제공에 따른 신용위험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위한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은 제외한다)

4. 정당한 이유 없이 지배주주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지배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에 관하여는 제34조의4에 따른다.

제34조의4(지배주주등에 대한 거래제한 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그 지배주주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다.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추가적인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 또는 자본금의 변동, 지배주주등의 변경 등으로 제1항에 따른 한도를 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적임원전원의 찬성을 거쳐야 한다.

④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에 관한

<신 설>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34조의5(지배주주등의 행위제한 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등은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이익에 반하여 지배주주등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함께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누구에게든지 제34조의4제1항의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

<신 설>

여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신용공여에 관여하는 행위

4. 금리, 수수료 또는 담보 등에
서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비교
하여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
자에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
로 지배주주등 자신이나 제3
자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
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등이 제
1항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불식 할부
거래업자 또는 그 지배주주등에
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
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
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34조의6(경영건전성 기준)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
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
을 지켜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재무구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4.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영건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증가, 위험자산의 소유 제한 등 경영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등(회사에 한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의 부실화로 인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경영건전성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u>제3절 조사 및 감독</u> <u><신 설></u> 제35조(위반행위의 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u>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u>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 ⑦ (생략) 제37조(<u>보고 및 감독</u>) ①·② (생략) <u><신 설></u>	<u>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u> 1. <u>지배주주등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신규 취득 금지</u> 2. <u>그 밖에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 성격의 거래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u> <u><삭 제></u> <u>제4장 조사 및 감독</u> 제35조(위반행위의 조사) ① ----- ----- <u>시장·군수·구청장</u>----- ----- ----- ----- ----- -----.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37조(<u>보고</u>) ①·② (현행과 같음) <u>제37조의2(감독) ①</u> <u>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그 지배주주등을 감독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u>
--	---

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선수금 운용의 건전성 감독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융위원회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나 그 지배주주등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그 지배주주등에 대하여 선수금 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하고, 그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또는 그 지배주주등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제4절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신 설>

제40조(영업정지 등) ①·② (생략)

③ 시·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검사의 방법·절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그 밖의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삭 제>

제5장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제40조(영업정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42조의2(행정처분)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그 지배주주등이 제4장 또는 제4장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2. 경고

3. 주의

4.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5. 수사기관에의 통보 또는 고발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임직원이 제4장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위반행위에 관련된 임직원에게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또는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2.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또는 정직요구

3. 임직원에게 대한 주의, 경고 또는 문책요구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또는 그 지배주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

제4장 보칙
<신 설>
제42조의2 (생 략)

<신 설>

의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
를 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 이하
2. 지배주주등이 제34조의4제1
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경
우: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 이
하
④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제42조제2항 각 호의 사
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삭 제>
제6장 보칙
제42조의3 (현행 제42조의2와 같
음)
제45조의2(청문) ① 공정거래위원
회는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공
제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
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40조제2항
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
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2조의
2제2항에 따른 해임권고 또는

제46조(사무의 위탁) <신 설>

① (생 략)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대한 감독, 처리·보고, 조사·확인, 자료의 제출 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요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사업자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면직요구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
여야 한다.

제4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공
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위
탁할 수 있다.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③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
임하거나 -----

-----.

⑤ 제27조의5 및 이 조 제1항
또는 제2항-----
-- 자의 -----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신 설>

제4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판매 또는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4. 5. (생략)

② (생략)

-----.

<삭 제>

제7장 벌칙

제48조(벌칙)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34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3의3. 제34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자

3의4. 제34조의5의 금지행위를 한 자

3의5. 제34조의6을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

4.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생략)

<신설>

② (생략)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략)

<신설>

3.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0. (생략)

<신설>

<신설>

제50조(벌칙)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제34조의3의 금지행위를 한
자

② (현행과 같음)

제53조(과태료) ① -----

-----.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37조의2·제42조의2에
따른 검사·조사·명령·요구
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현행과 같음)

② -----

-----.

1. ~ 10. (현행과 같음)

10의2. 제34조의4제3항을 위반
하여 재적임원 전원의 찬성을
받지 아니한 자

10의3. 제34조의4제4항·제5항

	<u>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주요 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u>
11. · 12. (생략)	11. · 12.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③ 제31조제4항에 따른 징계·해임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u>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u>④</u> ----- ----- -----.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제33조에 따른 재화등의 거래기록·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내용을 <u>소비자</u> 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자	11. ----- ----- ----- <u>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가</u> -----
<u>④·⑤</u> (생략)	<u>⑤·⑥</u>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u><신설></u>	<u>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u>
<u>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u>	<u><삭제></u>

<u>항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u> ⑦ <u>제4항</u>에 따른 과태료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⑧ 제1항부터 <u>제5항</u>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u>제5항</u>----- ----- ----- -----. ⑨ ----- <u>제6항</u>----- ----- -----.
--	---